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23.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 · 세출결산 승인안**

I. 결산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3. 5. 30
- 회부일 : 2023. 6. 1.
- 의안번호 : 879

II.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가. 시장비서실

-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의 세출 예산현액은 3억 5,890만 원으로,
이 중 3억 3,98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910만 원(불용률 5.3%)임.

<표-1>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계	358,900	339,800	0	19,100	5.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000	61,990	0	2,010	3.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100	270,036	0	17,064	5.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00	7,774	0	26	0.3

나. 정무부시장실

- 202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660만 원으로, 이 중 1억 9,576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84만 원(불용률 0.4%)임.

<표-2> 202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계	196,600	195,761	0	839	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92,762	0	838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2,999	0	1	0.0

3. 세출예산 집행내용

- 가. 예산 이용 : 없음.
- 나. 예산 전용 : 없음.
- 다. 변경 사용 : 없음.
-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 마. 다음연도 이월액 :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검토

- 시장비서실은 시장 비서업무와 시정 전반의 시책 추진 관련 보좌 업무를 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¹⁾를 편성해 집행 중임.
- 시장비서실은 2022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총 3억 5,890만 원 중 3억 3,980만 원을 지출하고 1,910만 원을 불용 처리함(불용률 5.3%).
 -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만 원(불용률 3.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06만 원(불용률 5.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만 원(불용률 0.3%)을 불용 처리함.
- 시장비서실은 2021회계연도 당시 집행잔액 1억 191만 원을 남겨 불용률이 29%에 달했으나 2022회계연도의 경우 불용률이 5.3%로 크게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 회의 등이 가능해져 불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시장비서실의 불용률 5.3%는 서울시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 3.7%²⁾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므로, 시장비서실은 불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경비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출됨.

2) 일반회계 2.2%, 특별회계 7.5%

예산집행을 통해 수지균형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표-3> 2021년-2022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과목 (통계목별)	2021년		2022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책추진	60,000	26,188 (43.6)	64,000	2,010 (3.1)
기관운영	287,100	75,719 (26.4)	287,100	17,064 (5.9)
부서운영	4,800	0	7,800	26 (0.3)
계	351,900	101,907 (29.0)	358,900	19,100 (5.3)

- 시장비서실의 2022년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시장비서실은 법정공휴일 1회³⁾, 주말 및 출장지 5회⁴⁾에 걸쳐 총 194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함. (직원격려, 화환설치, 경조사비 등 제외)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⁵⁾에서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주말,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 사용자 자택 근처, 주류 판매 업종 등에서 사용

3) 2022.03.01.(화), 시정현안 유관기관 업무협력 간담회, 시장 외 5명, 160,560원 지출

4) 2022.07.30.(토), 주택정책관련 현지전문가 간담회(싱가포르), 시장 외 11명, 435,040원 지출
2022.07.31.(일), 세라비(싱가포르), 주싱가포르 한국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오찬 간담회, 시장 외 9명 382,043원 지출

2022.10.22.(토), 국제가든 대표 및 관계자 간담회(프랑스), 시장 외 9명, 260,719원 지출

2022.10.23.(일), 뷰티산업 관련 대표 및 관계자 간담회(프랑스), 시장 외 9명, 362,102원 지출

2022.10.29.(토), 건축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네덜란드), 시장 외 9명, 336,053원 지출

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할 수 없도록 별표6)로 규정하고 있음.

- 시장비서실은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시정 현안 관련 업무협력 간담회를 갖고,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는 행사 대표, 현지 전문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함.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범위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무원외출장에 수반되는 예산은 「공무원여비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등에 근거하여 별도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시장비서실은 출장지에서의 업무추진비 지출을 가급적 지양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6)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 (203목)

가.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자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 (4) 사용자의 자택근처
-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2 202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검토

- 정무부시장실은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⁷⁾를 편성해 집행 중임.
- 정무부시장실은 2022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총 1억 9,660만 원 중 1억 9,576만 원을 지출하고 84만 원을 불용 처리함(불용률 0.4%).
 - 구체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4만 원(불용률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만 원(불용률 0%)을 불용 처리함.
- 정무부시장실은 2021회계연도 당시 집행잔액 8,210만 원을 남겨 불용률이 41.5%에 달했으나 2022회계연도의 경우 불용률이 0.4%로 크게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 회의 등이 가능해져 불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표-4> 2021년-2022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과목 (통계목별)	2021년		2022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관운영	193,600	80,683 (41.7)	193,600	838 (0.4)
부서운영	4,200	1,331 (31.7)	3,000	1 (0.0)
계	197,800	82,104 (41.5)	196,600	839 (0.4)

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출됨.

가. 세출의 기관 목표 부합 및 명확한 집행 기준 수립 필요

- 정무부시장실의 최근 3년간 집행대상별 협조업무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협의 총 9,322만 원(763건), 유관기관 총 7,050만원(412건) 언론·외부전문가 등 총 4,237만 원(248건) 대상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무부시장실이 업무보고 등에서 주요기능을 의회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민생도모,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정책 공조로 상생적 협치 시정 구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세출에서는 ‘내부협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바, 기관 목표와 실제 지출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표-5> 2020-202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협조업무 수행현황

집행대상	건수(건)				금액(원)			
	2020	2021	2022	계	2020	2021	2022	계
시의회	57	71	36	164	17,148,600	8,289,200	8,450,500	33,888,300
유관기관	174	86	152	412	32,004,900	10,292,750	28,206,000	70,503,650
내부협의	323	248	192	763	42,364,920	23,287,180	27,565,220	93,217,320
국회	28	104	55	187	4,588,500	10,655,700	11,678,840	26,923,040
언론, 외부전문가 등	32	123	93	248	5,382,700	16,394,940	20,592,240	42,369,880

- 한편, 정무부시장실의 최근 3년간 집행대상별 협조업무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건수와 금액이 그 대상에 상관없이 매년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정무부시장실은 실국의 특성상 인사 변동이 잦고,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정무부시장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이 일부 반영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집행대상별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다만, 정무부시장실은 주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내외 조정과 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의 탄력적인 집행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집행대상별로 보다 명확한 집행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정무부시장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되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대상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업무추진비의 법정공휴일 및 주말, 비정상 시간대 등 지출 지양

- 정무부시장실의 2022년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정무부시장실은 법정공휴일 1회⁸⁾, 주말 3회⁹⁾, 비정상 시간대 1회¹⁰⁾에 걸쳐 총 61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함. (직원격려, 화환설치, 경조사비 등 제외)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¹¹⁾에서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주말,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 사용자 자택 근처, 주류 판매 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별표¹²⁾로 규정하고 있음.
- 정무부시장실은 유관기관, 전문가, 국회 관계자 등과 시정 소통 협력, 시정 주요 현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추진비의 법정공휴일, 주말, 비정상 시간대 등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8) 2022.03.01.(화) 13:00, 시정 소통 협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정무부시장 등 5명, 165,100원 지출

9) 2022.01.29.(토) 20:50, 시정 소통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정무부시장 등 5명, 184,000원 지출

2022.02.26.(토) 12:38, 시정 소통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정무부시장 등 2명, 26,000원 지출

2022.02.26.(토) 20:20, 시정 소통 협력을 위한 국회 관계자 간담회, 정무부시장 등 2명, 26,000원 지출

10) 2022.03.08.(화) 23:01, 시정 소통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정무부시장 등 6명, 204,000원 지출

1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 (203목)

가.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자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그러나 정무부시장실은 간담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금을 세입조치한 바 있음.
- 정무부시장실은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법정공휴일, 주말, 비정상 시간대 등에 지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출이 부득이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칙이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